변경 대비표

1. 해당 투자신탁명 : 알리안츠GI글로벌에코테크증권투자신탁[주식]
알리안츠GI동유럽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알리안츠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_파생형]
알리안츠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알리안츠브릭스30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_재간접형]
알리안츠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알리안츠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
알리안츠월지급인컴앤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_재간접형](H)
알리안츠인컴앤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_재간접형](H)
알리안츠퇴직연금글로벌이머징4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2. 효력발생 예정일 : 2015.06.18

3. 변경 사유 : 1)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
2) 투자대상 자산 추가(양도성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매수) 및 법 개정사항 반영
3)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 갱신

펀드명	부책임운용인력 변경	정기갱신	투자대상자산 추가
알리안츠GI글로벌에코테크증권투자신탁[주식]	최재희→강세진	O	O*2)
알리안츠GI동유럽증권자투자신탁[주식]	최재희→강세진	O	O
알리안츠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_파생형]	최재희→강세진	O	O
알리안츠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	최재희→강세진	O	-
알리안츠브릭스30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_재간접형]	최재희→강세진	-	O*2)
알리안츠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]	최재희→강세진	-	O
알리안츠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	최재희→강세진	-	O
알리안츠월지급인컴앤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_재간접형](H)	최재희→강세진	-	O
알리안츠인컴앤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_재간접형](H)	최재희→강세진	-	O
알리안츠퇴직연금글로벌이머징4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	최재희→강세진*1)	-	O

*1) 모투자신탁의 부책임운용인력 변경

*2) '환매조건부매수' 만 추가 (양도성예금증서 제외)

<집합투자규약>

*알리안츠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을 제외한 나머지 펀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17 조(투자대상 자산 등)	① <생략>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	① <좌 동> ② ----------.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1. ~2. <생략> 3. <신설> 4. <신설>	1. ~2. <좌 동> **3. 양도성 예금증서** **4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)**
제 18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<생 략> 2.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<생 략> 2.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, **양도성 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매수**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, 금융기관에의 예치, **양도성 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매수**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 45 조 (투자신탁의 해지)	② <생략> 1.~4. <생략> 5. <신설>	② <좌 동> 1.~4. <좌 동> 5. **2015 년 1 월 1 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**
부칙	(신설)	부 칙 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 년 6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.

<투자설명서>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<부책임운용전문인력> **최재희**	<부책임운용전문인력> **강세진**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-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	-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, **양도성 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매수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*알리안츠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을 제외		